

제285회 정례회
2009. 12. 15(화)

심 사 보 고 서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



충 청 북 도 의 회
행 정 소 방 위 원 회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09. 12. 15.
행정소방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11월 11일
충청북도지사

2. 회 부 일 자 : 2009년 11월 16일

3. 상 정 및 의 결 일 자

제28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소방위원회(2009. 12. 7.)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원안의결)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신동인)

1. 제안이유

- 충청북도립대학내 실습실 부족과 최근 신설된 학과에 대한 강의실 공간부족에 따라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노후된 조립식 건물인 학생관이 대학생 건강관리 및 화재위험에 취약한 실정으로
- 부족한 실습실·강의실을 확보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 후생복지시설을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대학 실습실 및 강의실을 건립하고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 충청북도립대학 실습실 및 강의실 건립

- 위치 :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40번지의 5필지
- 사업규모
 - 부지 : 기존 대학 부지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40번지의 5필지)
 - 건물 : 지하 1층, 지상 2층 2,500m²
- 사업기간 : 2010. 2. ~ 2011. 12.
- 사업비 : 4,000백만원
- 투자계획 : 2010년 → 1,000백만원, 2011년 → 3,000백만원

III. 검토보고 요지

(행정소방수석전문위원 양권석)

이번에 제출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충북도립대학의 부족한 실습실과 강의실을 2년에 걸쳐 지하1층, 지상 2층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부지는 2008년 10월 22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으로 제출되어 보존부적합 도유지 매각·대체취득대상 토지로 충청북도의회 승인¹⁾(제275회 임시회·2008. 10. 24)을 받아 매입한 토지임.

건립예정인 건축물은 건축면적 1,000m², 연면적 2,500m²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축하여 실습실, 강의실과 동아리방 등으로 사용될 예정임.

소요사업비는 2010년 실시설계비와 지하층 시설비로 10억원, 2011년 2층 건축비로 30억원, 총 4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임.

1) 충북도립대학 부지내의 국유지와 옥천군유지 5,347m²를 20억 3,217만원에 매입하여 충북도립대학 실험실 신축부지로 활용하는 것임

충북도립대학은 실습실과 강의실이 부족하여 사회복지과, 반도체 전자전공과 재학생들에 충분한 면학장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계자동차과 소관 실험실습용 자동차는 보관창고 없이 노면에 위치하고 있어 자동차 수명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학교 미관도 저해하고 있음.

재학생들의 면학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건립예정인 건축물은 기존의 공학관과 정보관을 연결되도록 "ㄷ"자 모양으로 건축하여 재학생들에게 실습실과 강의실 제공과 이용편익을 제공하는 것에 이견 없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V. 토론 요지 : “생 략 ”

VI. 심사 결과 : 원안의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437 호
----------	-------

제출연월일 : 2009년 11월 1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충청북도립대학내 실습실 부족과 최근 신설된 학과에 대한 강의실 공간부족에 따라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노후된 조립식 건물인 학생관이 대학생 건강관리 및 화재위험에 취약한 실정으로
- 부족한 실습실·강의실을 확보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 후생복지시설을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대학 실습실 및 강의실을 건립 하고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재산의 취득

《충청북도립대학 실습실 및 강의실 건립》

- 위 치 :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40번지의 5필지
- 사업규모
 - 부 지 : 기존 대학 부지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40번지의 5필지)
 - 건 물 : 지하 1층, 지상 2층 2,500m²
- 사업기간 : 2010. 2 ~ 2011. 12
- 사 업 비 : 4,000백만원
- 투자계획 : 2010년 → 1,000백만원 , 2011년 → 3,000백만원

3.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2010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7-2)

(단위 : m²)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천원)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계	토지						
	건물	1 건	2,500.0	4,000,000	2011	신 축	
	기타						
1	토지						
	건물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40번지외5필지	2,500.0	4,000,000	2011	대학 실습실 및 강의실 건립	충청북도
	기타						
2	토지						
	건물						
	기타						
3	토지						
	건물						
	기타						
4	토지						
	건물						
	기타						
5	토지						
	건물						
	기타						
	토지						
	건물						
	기타						

관계법령발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 (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p> <p>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p> <p>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p> <p>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p> <p>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p> <p>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p>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 10조 및 영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전까지 충청북도의회 (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림야관리 전담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제 1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